

현을 위한 법률」(2001.7.1 시행예정)(2001년초 임시국회 통과전망)이 그 제도적 장치의 일환이다.

동법률 제4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은 전자정부(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의 사무를 전자화함으로써 행정기관 상호간 또는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의 구현을 촉진하고 지식정보화시대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관련제도를 개선할 것을 천명하면서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 당해 기관의 행정혁신과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사업간의 연계
2. 전자화 대상업무의 처리과정 혁신
3. 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수행 및 행정서비스의 제공
4.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의 제고 및 검정
5. 전자정부의 운영과 관련한 국민 불만사항에 대한 확인 및 신속한 개선

그리고 법제6조~14조에는 전자정부 구현과 운영의 원칙 9가지를 <표 2>와

같이 정하고 있다.

행정관리의 전자화와 관련하여, 제16조에는 행정기관의 문서는 전자문서(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 발송, 접수, 보관, 보존 및 활용되어야 하고(업무의 성격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 전자공문서는 당해 문서에 대한 전자적 수단에 의한 결계가 있음으로써 성립되며(17조①) 본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전자문서는 전자서명(전자서명법 2조2호) 또는 전자적수단을 이용하여 행정기관에 송신하여야 한다(18조①)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관리의 전산화를 위해서는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인 바 그 대상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21조①).

1.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2. 통계정보·문헌정보 등 행정업무의 수행에 참고가 되는 행정정보
3.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처리정보